

첨부1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8절 전력계통 안정운영 및 자료제공 (신설)	제8절 전력계통 안정운영 및 자료제공 5.8.5조의2(신재생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해석용 설비모델 제출) ① 송전계통에 연계되는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중앙 계약전기저장장치 사업자(이하 “대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설비모델을 각각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전소 병입전 인버터 단위기 시험 결과 등에 기반한 설비모델(이하 “초기모델”) 2. 발전소 병입이후 현장성능시험에 기반한 설비모델(이하 “확정모델”) ② 대상사업자는 최초 전력거래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초기모델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모델은 현장 성능시험을 실시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비모델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기 신·증설시 2. 인버터 교체 등 발전설비 변경으로 인해 모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전력계통 검토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 IBR 모델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④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설비모델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재생 발전 설비모델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6. 0. 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해석용 설비모델 제출 경과 조치) 제5.8.5조의2 개정사항은 관련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20MW 초과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기는 2개월 이내에, 20MW 이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기는 4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 또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